

현대 일본국 헌법 논의 구조

- 군사적 국제공헌론과 인권 담론의 대항 구조를
중심으로-

강 경 자*

(e-mail: keiko84@hanmail.net)

目次

- 1 서론
 - 2 탈냉전과 세계의 변화
 - 3 세계화와 개헌 논의
 - 4 지구화와 호헌 논의
 - 5 현대 일본국 헌법논의 구조의 함의와 전망
-

1 서론

일본국 헌법 논의는 1947년 일본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195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후 개헌과 호헌의 대립 갈등의 양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개된 전후 일본 정치사회 담론의 가장 주요한 축이 되어온 논의 중의 하나이다. 현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개헌논의를 포함하여 60년 이상 지속된 이 헌법 논의는 헌법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헌법 논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헌과 호헌의 대항구조 관계에서 그 담론의 축의 변화를 고찰해 볼 때 그 차이점을 통한 특징을 더욱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개헌논의 담론에 있어서 90년대 이후의 개헌론은 그 이전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그것은 군사적 '국제 공헌론'이라고 하는 담론의 대두이다. 80년대까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지의 개헌논의는 압도적으로 국가 고유의 권리로서 자위권 및 그 행사의 수단으로서 군사력의 보유를 헌법상 명문화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의 현대 개헌 논의¹⁾는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 협력을 위해서는 군사대국화가 필요하며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논의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 또한 80년대까지 논의의 중심에 있던 자위대 합헌 여부의 문제는 사라지고 자위대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자위대의 합헌 논란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합헌논란으로 즉 자위권을 위한 군사 보유론에서 국제 공헌을 위한 군사력 증강으로, 국제공헌론으로의 담론의 축의 전환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9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일본국 헌법 논의에 있어서 개헌 논의뿐만 아니라 호헌 논의에 있어서도 그 이전과는 다른 담론이 형성된다. 90년대 이후의 호헌 논의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은 인권의 가치를 높인 평화적 생존권의 강화이다. 미일안보폐기를 전제로 한 자주 방위론과 비무장중립론을 외치며 자위대 위헌 운동의 전개 등을 전개한 직접적인 호헌 운동으로서의 모습은 퇴조하고 9조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서 범국가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인권을 기저로 평화적 생존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호헌 논의에 있어서 국가권력 억제와 입헌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하며 제 9조의 인권론적 표현으로서의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한 인권 담론의 형성이 커다란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90년대 이후의 헌법 논의가 그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이러한 다른 양상이 나타내는 함의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활발한 개헌논의가 이루어진 배경과 호헌 논의의 담론 기저의 변환의 변수를 탈냉전 이후 진행된 세계화와 지구화 현상으로 보고 탈냉전으로 말미암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국제 환경 속에서 간주관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인식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사회 현상에 개입하고 일본국 헌법논의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는지 통합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탈냉전 후 변화된 국제 환경이 일본국 헌법 논의에 있어서 개헌과 호헌 논의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종래의 일본 개헌 논의 연구는 안보와 관련된 개헌론에 중점이 두어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일본의 군사

1) 와타나베 오사무(渡辺治)는 90년대 이후의 개헌논의를 현대개헌론이라고 하고 이는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한 군사대국화와 신자유주의적 국가 개편이라는 지배층의 요구가 표면화된 현상으로 보았다. 와타나베 오사무(渡辺治) 교수의 명칭을 따라 90년대 이후의 이 글에서는 개헌 논의를 현대 개헌론으로 명하고 또한 90년대 이후의 헌법 논의를 현대 헌법 논의로 술하고자 한다.

대국화 또는 보통국가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일본의 군사력 확대 조짐과 현실 정치 행보 일련의 정책 과정에 착목할 때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 연구들이다.²⁾ 국제공헌의 명분으로 자위대가 PKO 해외활동의 일환으로 해외 파병이 이루어지고 신가이드라인과 주변사태법, 유사 입법 제정, MD 체제의 공동 개발 정찰 위성의 도입, 정밀 폭격 장치의 도입 등의 군사력 확대 등의 현실 정치에 중점을 두고 보면 군사대국화를 향한 개헌만이 남아 있는 것처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한계점으로서의 개헌논의라는 점에 중점을 둔 나머지 일본국 헌법 논의의 구조를 통합적으로 보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³⁾ 박철희 교수가 대부분의 국내 연구가 개헌논의를 일본의 군사대국화라는 맥락에서 바라보고 군사대국지향의 일본에 대한 우려와 전망을 내놓는 경우들이 대부분으로서 헌법 개정의 이념적 배경과 개헌의 쟁점에 관한 입체적인 조망이 결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⁴⁾ 있듯이 구조적인 맥락 속에서의 일본국 헌법 논의에 관한 심도있는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내 현실 정치에서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호헌의 세력은 약화되었으나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이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호헌 논의는 또 다른 양상으로 변용되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음에도 국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본 헌법 논의의 구조에 있어서의 통합적 연구가 아직 미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일본국 헌법 논의를 부분적인 아닌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개헌과 호헌의 논의가 어떠한 인식하에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봐야 비로소 일본국의 헌법 논의에 대한 이해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탈냉전 후 질서 변혁과 세기 전환의 시대에 일본국 헌법 논의는 어떠한 담론을 개헌논의와 호헌논의에

2) 국내에서의 일본국 헌법의 개헌론 연구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와 개헌 논의」 남창희(1999) / 「일본국헌법의 개정 동향에 관한 고찰」 정혜인 (석사2006) 「새로운 평화주의의 모색-헌법조사회 최종보고서와 자민당 헌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김지연(2007) / 「2000년대 일본의 개헌 논의」 김창록(2008)/ 「2004년 이후 일본국헌법 개정론의 동향」 정혜인(2009) 등에 의한 연구가 있으며 개헌논의와 함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의 눈을 가진 군사안보와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외 이상봉은 「전후 일본인의 평화의식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전후 일본보수정치와 평화헌법: 평화헌법의 출현, 존재방식, 의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2006) 8)등이 있는데 통시적역사적 관찰을 통해 현대 평화의식에 접근하고 있으며 구성주의적 분석의 논문으로서 「일본 '평화헌법'의 경로의존성」 최기성 ; 허진성. (2010-03) 논문이 있다.

3) 일본 방위청의 방위 백서를 기초로 검토할 때 자위대의 공격에 대한 자위 이외의 무력 행사등 공격성을 부정하는 무력행사 부정의 원칙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95년부터 방위비는 전년 대비 신장율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들을 볼 때 군사대국화를 향한 일본의 행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박철희 「일본정당들의 헌법 개정안 시안분석을 통해 바라본 개헌논의의 정치과정」 일본연구논총 27호

있어서 형성하며 전개되어 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탈냉전과 세계의 변화

냉전구조는 정치 경제 기술 군사 등의 영역에 전면적 대립을 동반했다. 정치적으로는 이질적인 사회 체제간의 이데올로기가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세계의 자본주의와 소련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이 있었다. 냉전시대는 그러나 1989년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대를 전후하여 여러 공산주의 나라가 차례로 붕괴함에 따라 냉전 구조는 해체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포스트 냉전의 세계, 즉 탈냉전에 관한 여러 관점이 있겠으나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의 지적은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는 냉전 후의 세계에는 네 가지의 변동이 있다고 보았다.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일극 세계 군사 질서의 성립, 단일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성립, 민족주의의 보편화, 민주주의의 지구화이다. 그는 이를 다시 크게 두 가지 추세로 대별하여 세계화와 지구화로 대별하였는데 세계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극화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확장이요 지구화는 민족의 평등한 권리 인간의 평등한 권리를 지향하는 변동과정을 나타낸다고 보았다.⁵⁾

이 글에서는 사카모토 교수가 제시한 탈냉전 이후의 세계의 변화 네 가지 변동을 커다란 두 축-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의 변화-로 대별하고 이를 세계화와 지구화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우선 수직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일극체제로 삼는 패권국 중심의 계층적 질서의 변화와 이에 동반하는 자본주의의 확산의 현상을 뜻하며 수평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한 평등화를 향한 지구화의 변화로서 초국가적 변화를 통한 지구시민사회의 개념의 확충에 따른 인식의 변화에 따른 변화로서 지구 사회, 지구 공동체와 같은 개념이다.⁶⁾

이러한 개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다면 로즈노(J. Rosenau)의 세계화 개념을 기초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로즈노는 탈냉전 이후 세계화의 특징을 ‘국가 중심적 세계’와 ‘다중심적 세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국가 중심적 세계’가 국가 권력이 결정적인 변수들로 남아 있는 국가들의 사회라면 ‘다중심

5) 사카모토요시카즈(1996) 『탈냉전시대 아시아 시민운동의 과제』 한울 p.9-12

6) 広瀬和子 「安全保障概念の歴史的展開」 世界法学年報 26号 (2007) p.3

적 세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조직, 집단, 개인들이 국가의 통제 외부에서 일종의 초국가적 사회를 구성하는 관계로서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⁷⁾ 초국가적 조직, 초국적 문제, 초국적 공동체, 초국적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중심적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하는 수직적인 변화로서의 세계화는 국가 중심의 권력 질서의 세계, 지구화는 다중심적 초국가적 사회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토대로 냉전 후 세계변화를 수직적 수평적 변화로 보고 이를 세계화와 지구화의 개념으로서 보고 이러한 탈냉전 이후 종횡의 변화가 일본국 헌법 논의에 있어 개헌과 호헌의 담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3 세계화와 개헌논의

탈냉전 이후 진행된 세계화 흐름은 미국 일극중심의 패권적 질서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확산의 경향을 확연하게 보이며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을 중심으로 일극 체제에 부응하여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군사적 공헌을 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과 국제공헌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걸프전쟁과 유고의 민족 대립 캄보디아의 내전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이들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군사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군사적 국제공헌이야말로 일국 평화주의에서 벗어나 국제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국제 공헌 담론에 힘을 실어 주게 된다. 특별히 걸프전에서 130억 달러란 거액의 전비를 내고도 미국과 동맹국으로부터 인적 공헌이 없는 수포책외교라는 비난을 받게 되자 자위대를 통한 군사 공헌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점화되기 시작 한 것이었다.

그런데 국제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일국 평화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국제공헌론은 그 시발점으로서의 문제의식 및 논의와는 달리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미군과의 공조가 국제 공헌이라는 인식으로 변용되면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군사 대국화로서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유엔중심이 아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변용된 국제 공헌론이 9조 개정을 주안점

7) James N. Rosenau and Ernst-Otto Czempiel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orde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 Cambridge [England]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92

으로 하는 현대 개헌논의로 이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용된 국제 공헌론은 현실 정치 속에서 외교와 안보의 다양한 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浪)를 중심으로 한 90년대 국제 공헌론자들의 논리는 유엔중심주의이었다. 유엔을 앞장 세우면서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군사적 국제 공헌도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 공헌론의 문제 제기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유엔 중심주의는 개헌논의에 있어서 일국 평화주의에서 벗어나 국제 공헌을 하기 위해서 헌법적 제약이 있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국제 공헌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서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면서 국제공헌론의 담론을 형성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 속에 활발한 담론을 전개하게 된 군사적 국제 공헌론은 다름 아닌 미소 양국의 시대가 끝나고 미국 일극 시대의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에 합류하여 일본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일본보수 지배 세력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던 것으로서 국제 공헌론에 사용된 유엔 중심주의는 미국이 유엔을 이용하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 미국이 유엔의 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유엔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미국에 대한 협력을 유엔에 대한 협력으로 유엔중심주의를 강조한 것이었다.⁸⁾

먼저 미일 관계를 강화해나가면서 선택해 나가는 안보 전략을 통해 미국의 군사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국제 평화에 이바지 하는 길이라는 인식을 볼 수 있다. 1952년 체결되었던 미일안보조약은 소련이라고 하는 가상 적국을 봉쇄하는 색채가 깊었으나 소련의 붕괴 후 탈냉전 시대를 맞아 가상 적국의 소멸로 미일안보조약의 존재 이유는 희박해지게 됨에 따라 미일안보조약의 존폐에 대한 문제제기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탈냉전 후 미일 양국에 있어서 미일안보 체제를 유지할 명목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은 커다란 과제이었다.⁹⁾ 그런데 일본은 가상 적국이 사라진 탈냉전을 맞아 미일안보조약 폐기가 아닌 한층 더 강화된 미일동맹의 선택지를 택하게 된다.

1996년 4월 하시모토 총리와 클린턴 대통령이 공동으로 선언한 미일안전보장 공동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냉전 후 변화된 국제 환경 속에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야말로 일본의 안전 보장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에 이바지 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8) 이상봉 「일본의 군사적 국제공헌에 대한 비판적 고찰」 21세기정치학회보 제 14집 2호 p.171-173
9) 徳良淳 「21世紀に向けた日米安保体制の基礎固め—日米安保体制を選び直す作業」防衛省 安全保障に関する懸賞論文.

.. 4. 총리대신과 대통령은 이 지역의 안정을 촉진하고 미일양국 정부가 지면한 안전 보장상의 과제에 대처해 나가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a) .. **총리대신과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틀은 미일양국간의 긴밀한 방위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하였다.** ...(b) .. 양국 수뇌는 미일간의 안전보장면의 관계는 이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긍정적인 관여를 지탱하는 지극히 중요한 기초의 하나라고 하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미국에의 위임과 책무를 강조했다.** .. 8. 총리대신과 대통령은 **미일안보조약이 미일군사동맹관계의 중핵이며 지구적 규모의 문제에 관해 미일협력의 기반인 상호 신뢰관계의 토대가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¹⁰⁾

이처럼 공동선언에서 냉전 후 미일 안보조약의 의의를 재정의 하고 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미일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관계를 표명하였을 뿐 아니라 이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1997년 미일 양국은 신미일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된다. 신미일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주변사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미군의 전투적 수행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자위대의 후방지원등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V. 일본주변지역에서의 사태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변사태)의 협력. 주변사태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이다. 주변사태의 개념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태의 성질에 착목한 것이다. ..

(2) 미군의 활동에 대한 일본의 지원: 후방지역 지원

일본은 미일안보조약 조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에 대한 후방지역지원을 행한다. 이 후방지역지원은 미군이 시설의 사용 및 여러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안으로 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후방지역지원은 주로 일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나 전투행동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과는 일선을 긋는 일본의 주위의 공해 및 그 상공에 있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후방지원을 행함에 있어서 일본은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가 가지는 권한 및 능력과 민간이 가지는 능력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자위대는 일본의 방위 및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임무의 수행과 정합을 피하면서 적절하게 이와 같은 지원을 행한다.¹¹⁾

이는 미국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미국 국민 모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

10) 『防衛白書』(2008) 日米安全保障 共同宣言(1996年 4月 17日) p. 348-349

11) ibid, p.360-363

는 사활적 국익에 관련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그 안전보장전략에 일본이 기여할 것을 요구한 것에 적극 동조, 지원한 것으로서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동맹국의 차원에서 세계 어느 지역이든 파병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었다.

이는 1978년의 구가이드라인과 대조적인 것으로서 구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일본의방위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시의 대처 행동 및 일본이외의 극동에서의 사태로 일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양국 간 협조 방안」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즉 방위 범주가 일본 이외의 극동지역으로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신가이드라인은 일본주변지역에서의 사태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중점을 두되 이 주변사태의 개념을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태의 성질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 미군과의 협력의 길을 열어놓았다. 또한 구가이드라인에서는 일본이 미군에게 기지제공이나 기타 편의의 제공 정도로 머물렀으나 신가이드라인에서의 협력은 기지제공은 물론 자위대가 직접 참가하는 병참지원, 기뢰제거, 감시, 경계, 수색, 비전투원 피난 등 광범위하게 그 내용이 확대 강화 되었다.

이 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본 국내에서는 미군에의 새로운 기지 제공이나 민간에 의한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을 국내법화 한 것으로서 1999년 주변사태법이 제정된다. 또한 2001년에 일어난 동시 다발 테러 911사건은 미일간 군사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서 동년 테러대책특별조치법, 2003년에는 이라크 특조법이 제정되고 2004년에는 유사법제의 정비가 진행된다. 이러한 유사법제의 정비 과정의 내용의 핵심도 미일 군사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미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위대 파병을 합법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법제를 기초로 국제공헌의 명분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이루어졌으며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역할도 확대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미일협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국제공헌 담론은 반전 의식이 강한 보수적인 일본의 여론층에 까지 광범위한 지지 기반을 확립하게 되는데 방위청의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국제 공헌론의 영향 하 미일안보를 통해 미국의 국제 전략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국제 평화에 이바지 하게 되었다는 여론이 평균 70%이상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¹²⁾

그리고 이와 같은 폭넓은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개헌론이 대두 되

12) 방위청의 자료에 의하면 미일안보조약에 관한 국민의 의식 세론 조사 결과 平成3년(1991)년을 기점으로(63.5%) 해마다 미일안보조약에 대한 선호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12년 현재는 81%에 달한다. 미일안보를 통해 미국의 국제 전략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국제 평화에 이바지 하게 되었다는 여론이 평균 70%이상으로 나타난다. 資料79 「自衛隊・防衛問題に関する世論調査」抜粋 (内閣府大臣官房政府広報室：平成24年1月調査 참조)

는데 그 특징은 자위대 해외 파병제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9조 개정을 주안점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면적 개헌론의 형태를 취한 것이었다. 2005년 자민당은 「신헌법 초안」을 발표하여 헌법의 전면적 개정안을 주장하고 민주당도 2004년 중간보고를 거쳐 2005년 10월 「헌법 제언」을 발표하여 창헌의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공명당도 2004년 당 헌법조사회가 작성한 「논점정리」를 발표하며 개헌론에 찬성의 입장을 나타낸다.

자민당의 신헌법 초안¹³⁾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위군을 창설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전술한 바의 미일안전보장 공동선언과 신미일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생각해 볼 때 만약 미국의 무력행위가 국제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가 적용될 경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무력행사도 가능하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5년간의 활동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한 중참위원회 헌법조사회 헌법 개정 논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특별히 안전보장에 대한 논의에서 인적 공헌을 통한 군사적 국제공헌을 위해 자위군 보유와 자위대 해외 파병 및 예방적 군사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현대 개헌 논의에 있어서 미국의 일극화의 시대 미국과의 공조가 국제 공헌에 이바지 한다는 일본의 인식이 변용된 국제공헌론 이라는 담론의 형성과 함께 개헌 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며 개헌 논의 담론이 종래 80년대까지의 양상과 확연하게 달리 구별되는 배경과 내용이 탈냉전 이후의 미국 패권 질서, 일극체제와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4 지구화와 호헌 논의

탈냉전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일본은 국제 공헌이라는 담론 속에 강력해진 미일동맹 하에서 군사력을 확대해 나가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또 다른 담론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냉전적 시각에서 안보와

13) 제 9조 2항 칩락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국가의 평화 및 독립,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위군을 보유한다. 자위군은 자위를 위해 필요한 활동 외에 법률에 의거해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제적 공조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과 일본의 기본적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www.jimin.jp

평화는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었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해야 하고, 또 상대 국가보다 힘의 우위에 있어야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진행된 하나의 커다란 변화의 흐름으로서 지구화의 현상은 안보와 평화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점을 열어 지구화 시대 새로운 안보 담론을 형성 시켜주게 작용한다. 즉 국가 차원에서의 군사력에 의한 평화 구축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평화 구축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다양한 행위자 즉 국제기구나 NGO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분쟁과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거버넌스적 시각에 입각한 초국가적 지구시민론과 같은 담론이다. 즉 비국가행위자들의 초국가적 관계가 국민들 간의 접촉의 증진을 통해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초래하고 규범의 변화 정치적 변화를 촉진하게 된다. 탈국가적 시민권(postnational citizenship) 개념의 등장¹⁴⁾ 등 보편적 인권의 가치 고양과 함께 자유화 및 민주화 그리고 인권 의식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인권규범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국제적 이해와 정당화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러한 지구화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 안보 인식에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포괄적 안보 개념의 대두로서 동서 대립의 냉전 시대의 안보 의식의 중심이 국가와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지구화 시대의 안보의식은 안보를 초국가적 문제로 바라보고 안보 문제의 주요 행위자나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안보관이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익의 보호와 증진 등과 같은 문제에 그 주안점을 두었던 데 반해 인간 안보는 인간 개인에 중점을 두고 인간 개인의 삶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위협 요소들로부터의 안전, 안보에의 중점을 두는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라는 사실에 착목할 수 있다.

‘인간 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이 국제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유엔 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1994)를 통해서이다. 이 보고서는 인간안보를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정의하면서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사회, 정치의 7가지 영역에서 야기 되는 위협을 막는 것이 인간 안보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⁵⁾ 일본정부는 2000년 9월 유엔

14) Soysal, Yasemin Nuholu Limits of citizenship: migrants and postnational membership in Europe / Yasemin Nuholu Soysal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 1994 Liebert, Ulrike. What It Means to Be(come) a Transatlantic Citizen: Rethinking Postnational Citizenship. :New German Critique; Spring/Summer2005, Issue 95, p93-105, 13p.

15) 이러한 유엔 개발계획(UNDP)의 정의와 접근 방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것과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는 강조하고 있으나 폭력적 분쟁 즉 공포로부터의 간과했다는 점 등의 비판을

밀레니엄총회에서 인간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위원회를 발족할 것을 제창하고, 2001년 오가타사다코(緒方貞子)와 아마르티아센(Amartya Sen)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인간안전보장위원회(Commission on Human Security: CHS)를 설립하고 외교정책의 주요 정책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제적으로 이니셔티브¹⁶⁾를 얻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3년에 제출된 보고서내용을 살펴보면 안보 패러다임에의 인식의 전환의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종래의 사고방식으로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권한과 수단은 국가가 독점하고 질서와 평화는 국가 권력과 국가의 안전 보장을 확보하는 것에 의해 유지된다고 여겨졌다. ... 국가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주요한 입장에 있으나 오늘날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으로부터 사람들의 안전 즉 인간의 안전보장에 시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¹⁷⁾

이라고 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도 국가의 안전 보장을 중심으로 했던 종전의 안보 패러다임이 인간을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외교정책 「인간의 안전보장」 파트의 팸플렛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의 안전 보장에 대한 보완적 의미로서의 인간의 안전 보장 개념을 이야기 하되 탈냉전 이후 글로벌화가 진행된 국제 사회 속에서 전통적인 「국가의 안전보장」의 사고방식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단언하면서 인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인간의 안전 보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냉전 후의 국제 사회는 경제의 자유화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글로벌화가 급속이 진전되었다. ... 냉전 구조의 붕괴는 종교 · 인종 · 민족 그 외의 것을 요인으로 하는 분쟁의 원인이 되어 난민 국내피난민 대인지뢰 소형 무기 등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이 문제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이들 하나하나가 상호 복합적으로 연

초래하였으나 인간 안보의 개념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포괄적 개념 정의에 대한 비판 하에 보다 더 명확한 개념정의를 시도되면서 포괄적 안보와 인간의 안보의 개념 구별과 광의와 협의의 인간안보 개념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논의 속에 일반화된 개념으로는 포괄적 안보가 국가 수준에서 질서와 안전에 중점을 주고 인간의 필요(needs)를 강조하는 반면 인간 안보는 개인의 수준에서의 정의와 해방, **인권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6) Edstrom, Japan's foreign policy and human security :JAPAN FORUM; OXFORD 2003, :209-226

17) http : //www.humansecurity-chs.org Human Security Now July 2003

결되어 있다. 글로벌화가 진행된 현재의 국제 사회에 있어서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변함없으나 국가가 그 국경과 국민을 지킨다고 하는 전통적인 「국가의 안전보장」의 사고방식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가의 안전 보장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으로서 제창된 것이 인간 한사람 한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사고하는 방식이 「인간의 안전보장」이다.¹⁸⁾

이처럼 탈냉전 후 진행된 글로벌화 즉 지구화 과정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식 전환을 통해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인간 안보의 강조는 보편적 인권 규범과 가치의 고양 속에서 일본국 헌법 논의 구조 속에서 호헌 담론으로서 인권 담론 형성을 촉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군사력에 의한 국가 중심의 안보가 아닌 인간 개인의 삶과 안전에 중점을 둔 평화적 생존권의 강조와 확립의 양상으로 호헌 담론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는 호헌 담론의 축의 전환, 호헌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폭넓은 호헌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유용한 전략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안보와 평화적 생존권은 국가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이라는 시점 하에서 평화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보고 「인권으로서의 평화」라는 의식에서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즉 국가 중심의 안전보장에서 인간의 안전보장이라는 패러다임에의 전환의 흐름 속에서 호헌적 논의의 중심은 평화적 생존권을 「21세기의 인권」 혹은 「제 3세대의 인권」이라 명명하면서 새로운 인권으로서 정립하기 위한 논의로 바뀌어 간다.¹⁹⁾

이러한 인권적 접근은 궁극적으로는 9조를 지키자는 호헌논의로의 귀결을 한다는 점에서 있다는 점에서 현대 일본국 헌법 논의에 있어서 개헌 논의에 대항하는 대항 담론으로서의 새로운 양상과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권 담론이 개헌 논의의 대항 담론으로서 활발히 전개 되어지는 양상은 평화적 생존권을 인권담론으로서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헌법 논의와 평화적 생존권을 내세운 시민 소송 등의 운동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일본국 헌법 논의 속에 평화적 생존권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는 호시노 야스사부로(星野安三郎)이다. 그는 헌법 전문²⁰⁾과 제9조²¹⁾, 인권을 접

18) <http://www.mofa.go.jp/> 外務省國際協力局 地球規模課題總括課

19) 辻村みよ子 「人權としての平和と日本国憲法」 『憲法から世界を診る』法律文化社 pp1-8

20)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보호 유지 할 것을 결의 하였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전세계의 국민이

목하여 전쟁 목적 군사 목적 때문에 자유나 인권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하면서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평화적 생존권을 어떠한 인권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이 평화적 생존권의 개념 확립을 위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진다.

야마우치 도시히로(山内敏弘)는 평화적 생존권을 「일본국 헌법의 원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직 형성도상의 인권인 평화적 생존권의 개념을 보다 더 치밀한 것으로 완성해내는 것은 일본국 헌법과 관련된 자들의 책무라고 하였고, 후카세 타다이치(深瀬忠一)는 평화적 생존권을 인류 보편의 자연법에 기초한 기본적인 인권이며 평화에 철저한 제 인권의 총체라고하면서 평화적 생존권의 인권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평화적 생존권이 가지는 자유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²²⁾.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 평화적 생존권을 인권론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전개 된다. 히사다 에이세이(久田榮正)는 평화적 생존권은 전국가적 권리로서 헌법 11조와 97조에서 인권적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하였다. 우에다 카츠미(上田勝美)는 「인간으로서 살 권리」라는 인권 개념을 강조하면서 모든 인권의 근원적 권리로서의 생명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생명권으로서 평화적 생존권의 의미 부여하고자 하는 논의에 까지 이르게 된다.²³⁾

또한 이러한 학자들에 의한 헌법 논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시민소송을 통해 평화적 생존권의 재판 규범성 확보와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인권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평화적 생존권의 재판 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평화적 생존권이 실정법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나가누마 사건 제 1심 판결 이후 재판 규범성은 없다고 하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나가누마 사건이란 홋카이도에 위치한 나가누마에 일본정부가 항공자위대

다같이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가운데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21) 제9조 [전쟁포기, 군비 및 교전권의 부인]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회구하고 국권이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2) 深瀬는 헌법 전문에 보장되어 있는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을 편의상 3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있다. 첫째는 국방 군사 목적으로부터의 혹은 국방 군사목적에 의한 강제로부터의 자유로서 가장 실정법적인 의미가 크다고 지적하고 둘째로 전쟁이라든가 군비를 폐지하는 방향에서의 능동적 운동 내지 행동에 참가하는 자유, 셋째는 보다 올바른 안정된 국제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혹은 전쟁의 희생이 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청구권을 들고 있다.

23) 上田勝美(2008) 「世界平和と人類の生命権確立」 『平和憲法の確保と新生』 北海道大学出版会 p.2-20

의 기지를 설치하고 나이키 미사일을 배치하고자 하면서 시작된 사건이었다. 미사일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토지가 필요하였는데 이를 위해 공익의 명분으로 보안림 지정을 해제하고자 한 것에 1969년 지역주민 271명 소송인단이 보안림 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1973년 나가누마 사건 1심 판결에서는 ‘평화적 생존권이 전 세계 국민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인권 그 자체인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 중에 생존하고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헌법 제3장의 각 조항에 의해 **개별적인 기본적인 인권**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규정되어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평화적 생존권의 재판 규범성을 인정 하는 판결이 내린다. 그런데 1976년 2심과 1982년 3심에서는 이 판결이 기각됨으로서 평화적 생존권의 재판 규범성을 확보 하는 것에 실패하게 된다.

그러나 평화적 생존권이 추상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정법적 재판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 소송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다시 활발하게 전개 된다. 1990년대 초 촉발된 걸프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다국적군에의 전비(戰費) 지출, 후방지원하는 자위대 파견 등에 대항하여 전국 각지에서 자위대 파견 저지 청구 시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평화적 생존권은 이러한 소송의 중심이 되는 핵심적 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 소송에 내려진 대부분의 판결은 평화적 생존권은 구체적 권리 내지 재판 규범성을 가진 독립적 권리가 아니라며 평화적 생존권의 청구권과 재판규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평화적 생존권은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시민의 소송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 소송의 동경지법의 판결에서 ‘평화적 생존권은 구체적 권리 내지 재판 규범성을 가진 독립적 권리가 아니지만 기본적인 인권에 있어서 위법한 침해 억압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때는 이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재판소에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함으로서 평화적 생존권에 있어서의 인권 담론의 영향력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8년 4월 이라크평화소송 판결에서는 마침내 평화적 생존권이 구체적 권리를 갖는 재판규범성 및 청구권을 인정받기에 이른다.

2008년 4월 17일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평화적 생존권은 현대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이 평화의 기반없이 존립할 수 없으며, 모든 기본적인 인권의 기초로서 그 향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저적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단순히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이나 이념을 표명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법규범을 가지고 있는 헌법

전문이 「평화 중에 생존할 권리」를 명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9조가 국가 행위의 측면에서 객관적 제도로서 전쟁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하고 및 인격권을 규정하는 헌법 13조를 비롯하여 헌법 제 3장이 개별적인 기본적인 인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의 법적인 권리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 또한 헌법 9조에 위반하는 전쟁의 수행행위의 가담, 협력을 강요당하는 경우 **평화적 생존권을 주요한 자유권적 양태의 표현으로서 재판소에 대해 당해 위헌 행위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등의 방법에 의해 구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는 평화적 생존권에 구체적 권리성이 있다.** ..24)

이것은 자국에 의한 혹은 타국과 공동으로 전쟁 수행하는 위헌 행위에 가담, 협력을 강요당하는 경우에 재판소에 보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평화적 생존권이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획기적인 판결이었다.²⁵⁾ 1심 판결 이후 35년 만에 자위대 이라크파병 저지 청구사건에 관한 나고야 고등재판의 판결에 의해 평화적 생존권의 구체적 권리성, 재판 규범성을 인정받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평화적 생존권을 중심으로 9조를 지키고자 하는 호헌적 논의와 운동은 지구화 시대의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즉 국가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인간 안보의 패러다임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권론이 그 기저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위협 요소에 대한 인식이나 안보 대상과 안보 목적이 인간의 평화롭게 살 권리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서 군사적 국제 공헌 담론에 대항하여 군사력으로 타국을 위협하는 것은 국민의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 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인간 안보적 패러다임의 논리로 군사적 국제 공헌의 대항 담론으로서 인권적 호헌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적 호헌담론은 개헌논의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정재계의 강력한 군사적 국제공헌론에 비해 정치적 약한 세력으로 정책적 결정요인이 되기에 약한 세력으로 비칠 수 있으나 국민적 여론의 지지와 활발히 전개되는 시민운동 등을 생각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개헌 담론의 대항 축으로서의 강력한 호헌 담론 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9조회²⁶⁾ 등의 시민 활동을 통해 개헌 반대 운동을 전

24) 現代憲法教育研究会編 (2010) 資料 1-6 名古屋高等裁判所抗訴審 2008年4月17日 『憲法 とそれぞれの人權』 法律文化社 p. 187

25) 小林武編 (2009) 「今日における平和的生存権の意義と可能性」 『いま日本国憲法は』 法律文化社 p.122-132 *ibid*, p.127

26) <http://www.9-jo.jp>의 홈페이지에는 헌법 9조의 조항과 함께 전국적으로 개헌 반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집회, 세미나, 서적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해 나가고 있으며 이들은 군사적 국제 공헌 담론에 대항하여 평화적 생존권이 비단 일본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이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9조의 정신을 세계화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도 민주당의 리버럴회와 같은 회원들은 참된 평화와 자유를 위해 9조의 정신을 세계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헌법 개정 시비의 질문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은 찬성이나 9조 자체의 개헌은 반대의 의견이 훨씬 압도적이다. 2007년에 실시된 NHK헌법 개정관련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41%가 헌법 개정을 찬성하지만 9조를 높이 평가하는 일본인은 81%에 달하여 압도적인 다수가 9조를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인에게 있어서 헌법 개정이 곧 9조의 개정이라는 의식이 없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있으나 9조는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론의 안보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은 많은 선행 연구가 입증하고 있다.²⁷⁾ 또한 일본의 정치는 그 주요한 기능이 최대한의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선호를 집약하여 정치적 안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성격을 띤다.²⁸⁾ 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인권 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호헌 담론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을 것이다

5 현대 일본국 헌법논의 구조의 함의와 전망

이상 일본 현대 헌법 논의 구조를 탈냉전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군사적 국제 공헌론의 담론에 대항 하는 인권 담론의 대항 축을 살펴보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의 흐름은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동맹국으로서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행보가 국제 공헌이라고 하는 변용된 국제 공헌론 속에 9조 개정을 주안점으로 하는 전면적 개헌 논의를 전개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헌 논의의 대항 담론으로서의 인권적 호헌 담론은 9조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서 범국가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인권론을 기저로 평화적 생존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담론을 형성하면서

27)대표적인 예로서 Glen D. Hook,(1996) Militarization and Demilitarization in Contemporary Japan(London, New York: Routledge). Katzenstein(1996)Cultural Norms and National Security: Police and Military in Postwar Japa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8) 猪口孝(2007)『国際関係論の系譜』,東京大学出版会, p.115

보다 더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며 9조의 평화 이념을 세계로 발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와 보통국가화를 우려하는 전망이 지배적인 현 시점에서 대항 담론으로서의 인간 안보와 인권 평화적 생존권이 얼마나 힘을 얻어나갈 것인지 또한 이러한 인권 담론들이 앞으로 일본의 국가 전략과 노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침으로 구체적인 헌법 논의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게 될 것 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현실의 정치가 아무리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정치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대적으로 규정된 가치 규범을 기초로 정치적 발현의 정당성을 부여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전 지구적 인권 규범이 고양된 분위기에서 인권 담론을 좌시하고 힘의 논리로 9조 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개헌 논의는 비단 일본 국내 정치만의 문제만이 아닌 동아시아 역내 평화 질서와 신뢰 구축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다하는 부진(不戰) 서약의 의미를 가지는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은 아시아 역내 과거사로 인한 민족 감정을 자극하여 상호 불신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서 과도한 분쟁 위협이나 군비 경쟁 군사력 증강으로 인한 불안 요소를 높혀 나갈 수 있다.

역내 갈등과 불신과 경쟁을 넘어서 이 시대 진정한 국제 공헌을 위해서라도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지구화 시대 평화적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최근에 더욱 첨예한 문제로 떠오른 종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인권 문제는 일본에 바라는 진정한 국제 사회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 담론이 세계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화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본은 인권 담론에 힘을 실어주는 논의가 진지하게 헌법 논의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전범국가인 일본에게 면죄부와 같은 평화국가로서의 이름을 수여 해준 평화 헌법 논의에 있어서 보다 강력한 인권 담론이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인간 안보 패러다임의 확대와 강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参考文献】

- 小林武 編 (2009) 「今日における平和的生存權の意義と可能性」 『いま日本國憲法は』 法律文化社 p.122-132 ibid, p.127
- 現代憲法教育研究會編 (2010) 『憲法 とそれぞれの人權』 法律文化社 p. 187
- 上田勝美(2008) 「世界平和と人類の生命權確立」 『平和憲法の確保と新生』 北海道大學出版會 p.2-20
- 廣瀬和子 「安全保障概念의 歴史的 展開」 世界法學年報 26号 (2007) p 3
- 辻村みよ子 「人權としての平和と日本國憲法」 『憲法から世界を診る』 法律文化社 pp1-8
- 田代菊雄(2005) 『平和と人權:憲法から考える』 pp.52-64.
- 山内敏弘,(2003) 『人權・主權・平和:生命權からの憲法的省察』 日本評論社,
- 山内敏弘 외 (1998), 『憲法と平和主義』 法律文化社, pp.-.
- 澤野義一(2007) 『平和主義と改憲論議』 法律文化社, pp.
- 猪口孝(2007) 『國際 關係論の 系譜』,東京大學出版會, p.115
- 坂本義和(1996) 『탈냉전시대 아시아 시민운동의 과제』 한울
- 박철희 「일본정당들의 헌법 개정안 시안분석을 통해 바라본 개헌논의의 정치과정」 일본연구논총 27호
- 이경주 (2009)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실천적 의의」 『민주법학』,41,민주주의법학연구회, pp.175- 217,
- 이상봉 「일본의 군사적 국제공헌에 대한 비판적 고찰」 21세기정치학회보 제 14집 2호 p.171-173
- Glen D. Hook,(1996) Militarization and Demilitarization in Contemporary Japan(London, New York: Routledge).
- Katzenstein(1996)C,cultural Norms and Natinonal Security: Police and Military in Postwar Japa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James N. Rosenau and Ernst-Otto Czempiel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orde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 Cambridge [England]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92
- Edstrom, Japan's foreign policy and human security :JAPAN FORUM; OXFORD 2003, :209-226
- Soysal, Yasemin NuholuLimits of citizenship: migrants and postnational membership in Europe / Yasemin Nuholu Soysal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 1994
- Liebert, Ulrike. What It Means to Be(come) a Transatlantic Citizen: Rethinking Postnational Citizenship. :New German Critique; Spring/Summer2005, Issue 95, p93-105
- <http://www.humansecurity-chs.org> Human Security Now July 2003
- <http://www.mofa.go.jp/> 外務省國際協力局 地球規模課題總括課

要 旨

90年代以後の日本国憲法論議は改憲論議においても、護憲論議において以前とは確然たる形で区別された談論の展開様相が見られる。改憲論議においては「国家貢献論」と言われる談論の台頭であり、護憲論議においては人権の価値を高める平和的生存権論の強調としての人権談論が挙げられる。

とすると、なぜ90年代以後の憲法論議がそれ以前とは確然と区別された様相が見られるのであろうか？そしてそのような異なる様相が現れる含意とは何か？

このような問題意識から出発し、本研究では現在活発な改憲論議が繰り広げられている背景と、護憲論議の談論の基底にある変換要素を、脱冷戦以後に進行された世界化と地球化現象として焦点を置き、脱冷戦以後、急変するグローバル環境とのインターアクション関係を通し考察した。即ち、相互主観的インターアクションを通じ、形成された認識がどのような脈絡の中で、どのようにグローバル状況の現象に介入し、日本国憲法論議において影響が及ぼされているかを統合的な視点から分析を試み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さらに脱冷戦後、変化した国際構造が日本国憲法論議において改憲と護憲の構造にどのような影響が見られたのかを考察し、日本国憲法の論議の構造を通じた含意と展望を新しい視点から見ようとする試論である。

本研究では脱冷戦後、大きな変化をもたらした軸を世界化と地球化の概念に分け、世界化を軸とするパワーと秩序中心の中心軸であるアメリカ国体制が日本の認識にどのような影響が与えられたのか、またこのような認識がどういった改憲論議に至ったのかについて、考察を述べた。また、水平的秩序の改編の中で、進められた地球化の世界変化がどのように超国家的概念の中で、人権概念と結合し人間安保のようなパラダイムの変化が日本の護憲論議の構造に平和的生存権の強化として結びついているのかを考察した。

本研究において、日本国憲法論議を国内政治のプロセスだけに限定せず、国際環境と談論の変化を中心とした対抗構造を通して日本で日本国憲法論議に対する新しい含意と展望が見られた。日本の場合、現在も軍事大国化に向けられた政治的な動きと改憲論議が活発になってはいるものの、世論の安保政策に対する影響力が強く、日本の政治が最大限のコンセンサスに基づいていること、政治的安定を目標とする保守的な性格を考えると、現代普遍的価値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人権談論を基底に展開される平和的生存権の護憲的談論の影響力は無視できず、東アジア安定と平和のためにもこのような人権的価値を基底とした護憲談論にパワーが与えられることが望ましい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促音、生成、持続時間、子音環境、音韻体系、発音指導

투 고 : 2012. 8. 31
1차 심사 : 2012. 9. 15
2차 심사 : 2012. 10. 6